

1. 개정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 있어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며,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 현실화(안 제17조)

-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에 비해 이의신청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입찰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개정

나.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10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규정

라.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3, 제8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나목 중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당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법 제39조에 따른 금액 부과와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차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금액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준용

2.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금액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준용

④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의3(법 제39조에 따른 금액의 납부절차 등) ①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부정당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통지 내용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로서 금액을 내려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금액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기한 내 수납기관에 내지 않은 부정당업자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금액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⑥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10일”을 각각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7.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8.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9.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사항

10.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 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내지 제15조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예정가 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 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 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예정가 격) ① ----- ----- ----- ----- --. ----- -----.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하 다):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1. ----- -----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 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 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		2. ----- ----- -----		

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생략) 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라. (생략) 2의2.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 ----- ----- -----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 ----- 다.·라. (현행과 같음) 2의2.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	--

②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
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② -----
 -- 제1항제1호·제2호 및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
 ---.

제15조의2(법 제39조에 따른 금액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차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금액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준용

2.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금액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준용

④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횡

<신 설>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의3(법 제39조에 따른 금액의 납부절차 등) ①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부정당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통지 내용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로서 금액을 내려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금액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기

제17조(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한 내 수납기관에 내지 않은 부정당업자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금액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⑥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8.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9.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 건부계약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사항

10.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② -----

----- 20일 -----

-- 15일 -----
-----.

③ -----
----- 15일 -----

-----.

④ -----

----- 20일 -----

-----.